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6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2.

발 의 자 : 이강일 · 염태영 · 김문수
민병덕 · 박홍배 · 강준현
황운하 · 이훈기 · 박희승
최기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상응하여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청년정책의 실질

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청년정책 연령산정의 특례) ① 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결정할 때,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 상한의 연장 기준, 적용 대상 청년정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3조의3(의무복무이행에 따른 청년정책 연령산정의 특례) ①</u> <u>청년정책을 시행하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연령 기 준을 적용하는 청년정책의 수 혜 대상을 결정할 때, 제2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 군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 위에서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연령 상한의 연장 기준, 적용 대상 청년정책 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